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28일, 윤종균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3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윤종균)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판매자 정보 등을 게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량이 증가하며 사기 피해 및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판매자에 대한 인증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제3자가 타인의 중고차를 게시하고 선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가. 자동차 매매 관련 타인 소유 차량의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동의 의무화 등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 간의 중고차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제3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을 매매하려는 광고를 게시하는 허위매물 의심 사례가 적발되는 등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시 사기 피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가 중고차를 취급하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6개사를 조사한 결과('25.2~3.), 모든 플랫폼에서 비소유자도 광고글 게시가 가능하며, 소유자 동의 확인 절차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의 판매·알선 광고를 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

써 중고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부동산에 대한 직거래플랫폼 자율규제와의 형평성 고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간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운영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한 자율규제 방식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한편 개정안은 개인간 자동차 직거래 시 소유자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업계에서는 자동차 직거래 시에도 부동산 영역과 같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자율규제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자동차매매업자 및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소유자의 동의 규정 적용 관련

개정안 제57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판매·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대상은 일반 개인, 자동차매매업자,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등이 모두 포함됨.

이에 대하여 일부 업계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자는 현행법에서 이미 자동차정보제공 의무, 거짓 정보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 및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도 소유자 동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등의 온라인 정보제공 및 거래가 어려워지고, 이는 오히려 가족·지인 등을 대리하는 선의의 대리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개정안의 취지는 제3자가 타인 소유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소유자에게 소유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 민법 제211조에 근거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과태료(제81조)

개정안 제84조제2항제7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하거나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으로 개정안 같은 조 제5항제10호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표시·광고를 하는 자에 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일반적으로 과태료 수준은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면 제재조항 간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다만,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도 조항의 실효성 및 예방효과를 고려하여 법인 또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높게 설정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과태료 금액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나.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이력 등 정보 미제공 시 처벌 규정 신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그 사용인 및 종사원을 포함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이라 함)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8조제4항), 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80조제7의2).

개정안은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보 게재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하여 일부 업계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중 일부를 누락하더라도 개정안 제80조제7호의2에 따른 ‘정

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수 있어, 단순 누락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입법례를 살펴보면, 정보 등을 거짓으로 고지한 자와 고지하지 아니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법례와 차등하여 처벌하는 입법례가 모두 있음.

현행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표 등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80조제9호의2에서는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84조제4항제22호의2에서는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은 자동차이력 등의 정보 제공의 엄격한 이행을 확보함에 따른 소비자 보호 측면, 이력 정보 게재행위의 중요성, 유사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